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지시를 금지 행위로 명시 등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21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지시’를 금지행위로 명시(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2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신설(안 제41조)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3. 25.

다. 회 부 일 : 2025.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작품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41조).

Ⅲ. 검토의견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지시’를 금지행위로 명시(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가. 개정안 요지

-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예술인·예술단체의 예술 활동 및 예술 활동의 성과 전파 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제2항).
-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예술단체에게 차별행위를 하거나 차별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제2항).
-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제1항).
-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거나 방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제2항).
-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3 –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
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
혼·별거·이혼·사별·재혼
·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
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
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
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
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
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
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
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
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

--하거나 차별행위를 지시하
여서는-----.

1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

해 금지) ①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④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 금지) ① 국가기관등의-----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

② -----

-----방해하거나 방해를 지시하여
서는-----.

③ (현행과 같음)

④ -----

-----배제하거나 배제
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

다. 검토사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과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에게 예술 활동 또는 예술 활동 성과 전파 활동을 방해하거나(제7조)¹⁾, 예술지원사업에서 불합리한 차별 행위를 하거나(제8조)²⁾,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제9조)³⁾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 1)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① 예술인은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3)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①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안은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하는 안 제 8조의 주체를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과 예술지원기기관의 임직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차별금지의 주체를 안 제7조 및 제9조와 일치시켜 법문언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또한, 개정안은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과 예술지원기관의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행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직접 행위한 자뿐만 아니라 행위를 지시한 자도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 취지상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대한 활동 방해 금지, 차별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조항은 그 행위의 지시에서부터 수행까지 일련의 전 과정에 대한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지행위를 구분하여 세분화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신설(안 제41조)

가. 개정안 요지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지시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1조제1항 신설)
 - 예술활동 방해 지시(제7조제2항 위반), 예술인 차별행위 지시(제8조제2항 본문 위반), 예술인·예술단체 명단 작성 지시(제9조제1항 위반), 예술지원사업의 공정한 심사 방해 지시(제9조제2항 위반), 예술지원사업 결과의 조작 지시(제9조제3항 위반), 예술지원사업 선정 대상의 배제 또는 포기 강요 지시(제9조제4항 위반)
-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1조제2항)
 - 예술활동 방해(제7조제2항 위반), 예술인 차별행위(제8조제2항 본문 위반), 예술인·예술단체 명단 작성(제9조제1항 위반), 예술지원사업의 공정한 심사 방해(제9조제2항 위반), 예술지원사업 결과의 조작(제9조제3항 위반), 예술지원사업 선정 대상의 배제 또는 포기 강요(제9조제4항 위반)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과태료) <신 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해물을 지시한 자
	2.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지시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성을 지시한 자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해물을 지시한 자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작을 지시한 자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배제 또는 강요를 지시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신 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해한 자
<신 설>	2.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한 자
<신 설>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

<신 설> <신 설> <신 설> 1. ·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부과·징수한다.	성을 한 자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 해를 한 자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 작을 한 자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배 제 또는 강요를 한 자 7. · 8.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다. 검토사항

○ 「예술인권리보장법」 4)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 4)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신고된 경우 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신고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예술인보호관에 의해 조사 절차를 거친 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사의뢰, 행정처분,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구제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피신고인·피해자·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보호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 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구제조치)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수사의뢰

2. 행정처분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고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⁶⁾할 수 있으며, 제41조⁷⁾에 따라 500만원 이하

5)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3조(시정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 및 제38조제3항에서 같다),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시정방안의 이행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시정 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성희롱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
2.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일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 해당 예술교육기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
2.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예술인권리보장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의 과태료가 부과됨.

- 그러나 현행법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가 없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행위를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행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지표가 분명해야 하는 반면, 예술의 자유 침해,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 및 공정성 침해금지 등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⁸⁾ 과태료 도입에 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8) 관련하여, 현행법 제정을 위한 심사 당시 법무부(2019.11.)는 현행법 금지 조항의 문언에 포함된 ‘예술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 ‘예술인’, ‘불이익의 위협’, ‘차별행위를 할 목적’, ‘이용’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벌칙, 과태료 부과 근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조항 등을 신설하려는 유사 취지의 동법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유사 취지 동법 법률안]

대표발의자	발의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심사경과
김승수의원	2024.6.25. (제2200904호)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소위 계류
강유정의원	2024.6.28. (제2201155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조항 신설	소위 계류
김재원의원	2024.7.3. (제2201330호)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소위 계류
강유정의원	2025.3.21. (제2209254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원회 회부 (미상정)

문 의 처

02)6788-5384